임실군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심의·의결된 「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」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4년 4월 24일

임실군의회의장 

임실군의회 규칙 제35호

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군수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1조제1항 본문 중 “거수 표결”을 “거수, 전자투표”로 한다.

제45조제1항제12호 중 “기립,거수”를 “기립, 거수, 전자투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